손해사정연구 제5권 제1호 2013. 02

자동차고장담보보험

(A study on vehicle mechanical breakdown insurance)

한창희*
Changhee, Han

<국문요약>

자동차보험은 피보험자동차의 소유, 사용, 관리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또는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보상하는 보험이다. 자동차고장은 자동차운행 중 발생할 수도 있고 자연소모로 인하여 발행할 수도 있다. 특히 후자의 경우에는 우연한 사고가 아니므로 보험의 원리상 보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업감독규정은 "자동차의 소유·사용·관리로 인한 피보험자의 각종 비용 담보"(동규정 제7-62조 제2항 3호)하여 자동차고장담보보험이 허용되고, 이미 현대해상과 동부화재는 자동차제조회사의 요청에 따라 자동차제조회사가 보험계약자이고 자동차고장의 경우 자동차소유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일반상품을 판매한 적이 있으나 역선택과 도덕적 위험으로 인하여 판매가 중단된 상황이다. 이 글은 보험가입시 자동차의 상태를 확인하는 증 도덕적 위험과 역선택의 방지를 위한 조치를 전제로 자동차고장보험의 활성화가능성에 대하여 검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 **국문색인어** : 고장담보, 워런티, 피보험이익, 역선택

* 국민대학교 교수

Ⅰ. 서론

자동차고장은 "자동차의 기계나 설비 따위의 기능에 이상이 생기는 일"[1]로서 타이어와 같은 소모품으로부터 자동조향장치의 고장과 같은 기능상의 부품이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자동차의 고장을 보험에 붙이는 경우 고장난 자동차부품을 장착하는 등 도덕적 위험과 역선택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 손해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보험업감독규정은 "자동차의 소유·사용·관리로 인한 피보험자의 각종 비용 담보"(동규정 제7-62조 제2항 3호)하여 자동차고장담보험이 허용되고, 실제로도 2000년대에 현대해상과 동부화재가 일반보험으로 판매한 자동차고장담보보험이 현재 거의 판매되지 아니하는 상황이다. 근래 미국이나 영국에서 자동차고장보험이 판매되고 있는 사례가 보고되기도 하여 자동차고장담보보험의 활성화방안을 연구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 글에서는 우연성을 결하는 경우가 많다고 판단되는 자동차고장담보보험을 허용하는 근거로서 영국에서의 피보험이익의 폐지동향을 살펴보고, 영국과 미국의 자동차고장담보의 현황을 검토한 후, 우리나라에서 자동차고장담보보험의 활성화가능성을 연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Ⅱ. 영국에서 피보험이익폐지 논의

1. 총설

"이익이 없으면 보험 없다"는 말처럼 피보험이익은 손해보험계약의 중심요소로 인정되고 있고,[2] 피보험이익은 보험계약의 기본요건으로 보험계약당사자는 보험목적과 특별한 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것이 없으면 보험계약은 무효이거나

1) 이기문 감수, 동아새국어사전, 동아출판사, 1989, 190면.
2) 양승규, 보험법, 삼지원, 2004, 193면.

실행할 수 없으며, 또는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게 되며,[3] 피보험이익의 존재이유로는 도덕적 위험의 방지, 손해보상의 범위제한, 도박의 방지 등이다.[4]

우리나라에서는 피보험이익이라 함은 보험의 목적에 대한 피보험자와 보험사고와의 경제적인 이해관계로서 그 목적에 대한 당사자의 법률상의 관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희망이익과 같은 사실상의 이익은 포함하지만, 이러한 이익은 피보험자가가 가지는 직접적인 이익에 한정되고 주주가 회사의 재산에 대하여 가지는 간접적인 이익은 보험에 붙일 수 없다고 해석되고 있다.[5]

영국법상 피보험이익은 영국해상보험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피보험자와 보험의 목적 사이의 법률적 관계를 요하는 엄격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인하여 보험실무의 편익에 지장이 된다는 비판이 있어 왔고, 2008년 1월 14일 영국 법개정위원회는 영국보험법 개혁의 하나로 피보험이익에 관한 보고서를 출간하였다.[6] 피보험이익은 보험을 정의하고 도박을 금지하기 위한 기능을 하였지만 현재는 이를 위하여서는 피보험이익의 개념은 더 이상 효용은 없고 손해보상원칙으로 충분하다는 논의가 있다.

다양한 금융파생상품의 등장으로 보험과 금융파생상품과의 구별이 희박하여지고 있고, 영국에서는 도박은 오늘날 광범위하게 용인되어 1994년 11월 이래 국민복권이 시행되고 있으며, 2005년 도박법(Gambling Act)은 1845년 게임법(Gaming Act)을 폐지하여(동법 제334조, 제335조) 도박계약이 법원에 의하여 집행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국가정책은 도박을 더 이상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규제하는 것이며, 피보험이익이 방지하고자 하는 것은 게임 자체가 아니라 보험을 위장한 도박이었는데, 현재에는 2005년 도박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도박위원회가 도박을 규제하는 상황에 의거하였다. 1984년 호주 보험계약법 제16조와 제17조는 피보험이익의 개념을 수정하였다.

2. 영국법상의 피보험이익

3) John Birds, Modern Insurance Law (Sweet & Maxwell, 2010), p. 39.
4) Malcolm Clarke, The Law of Insurance Contracts (informa, 2009) 4-2.
5) 양승규, 전게서, 197~198면.
6) Law Commission, Insurance Contract Law Issues Paper 4 Insurable Interest, 14 January 2008.

(1) 개관

영국해상보험법 제5조 제1항은 해상사업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피보험이익을 인정하고, 제2항은 특별히 보험목적에 대하여 법률상 관계(legal relation)가 있는 경우에 피보험이익을 인정한다.
영국판례는 피보험이익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보험목적에 대하여 법률적 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Macaura v. Nothern Assurance Co.사건[7]의 판시를 따르고 있지만, 상업적 편의를 중시하는 완화된 판례도 나타나고 있다.

(2) 영국에서의 피보험이익의 개혁

가) 요약

영국에서는 해상보험이외의 손해보험의 경우에는 피보험이익이 없더라도 계약을 집행할 수 있게 되었고,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2005년 도박법(Gambling Act) 시행으로 "게임이나 도박에 의한 계약은 무효이며, 도박에 기초한 결과의 대가로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또는 도박에 이겨서 획득하였다고 주장되는 금전 또는 유가물을 청구하는 소송은 제기하거나 유지될 수 없다"고 규정하던 1845년 게임법(Gaming Act) 제18조가 폐지되어 계약이 도박에 관련한 것이라는 사실이 있더라도 계약을 집행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다양한 파생금융상품의 출현과 관련이 있다.

1906년 영국 해상보험법 제4조 제2항과 그리고 동법 4조 1항에 의하여 "피보험이익이 없거나 이를 취득할 가망이 없는 경우에는 게임 또는 도박계약으로 간주되고," 무효이고, 1909년 해상보험(도박보험)법상 피보험이익이 없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범죄행위이다.

2008년 1월 14일 영국 법개정위원회는 영국보험법 개혁의 하나로 피보험이익에 관한 보고서를 출간하였고, 이에따르면 피보험이익은 보험을 정의하고 도박을 금지하기 위한 기능을 하였지만 현재는 이를 위하여서는 피보험이익의 개념

7) [1925] A.C. 619.

은 더 이상 효용이 없고 손해보상원칙으로 충분하다고 한다.

나) 영국에서 손해보험상 피보험이익의 개혁

피보험이익은 감독이나 기타 목적으로 보험을 정의하는데 필요하지 않고, 금융감독청은 보험을 도박, 그리고 금융파생상품과 같은 금융계약과 구별하는데 불필요하다고 결론지었다. 영국법상 보통법상의 손해보상의 원칙 이외에 피보험이익 개념은 불필요하다는 논거로는 첫째, 사고발생 시에 요구되는 피보험이익을 법률상 요구할 필요성을 찾기 어렵고, 손해보상의 원칙에 따르면 법률상의 권리임을 요구하는 영국법상의 피보험이익보다도 위험과 보험범위를 보다 정교하게 정의할 수 있다고 한다. 보험계약자가 입은 손해가 보험계약상의 손해에 해당하기만 하면 보험계약은 유효한 것으로 하고, 그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양 당사자에게 확실하다고 한다.[8)]

보험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해상보험의 영역에서는 피보험이익의 폐지로 인한 도박보험, 보험사기의 유발이라는 도적 위험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손해보상의 원칙과 인과관계의 쟁점이 피보험이익을 대체하게 될 것이라는 연구가 나와 있다.[9)]

(3) 시사점

영국은 근대보험의 발상지로서 우리 보험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바, 영국에서 손해보험에서 피보험이익개념의 폐지로 "이익 없으면 보험 없다"에서 "손해 있으면 보험 있다"로 변화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자동차보험의 담보범위 확장의 유력한 근거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8) Law Commission, op. cit., §7.44 p. 56.
9) 한창희, 해상적하보험상의 피보험이익, 법학논총 제28권 제2호(2011),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65면.

Ⅲ. 미국판례의 입장

1. 주보험법상의 보험사업

미국에서는 1944년의 McCarran-Ferguson Act에 의하여 보험사업에 관하여는 주법이 연방법에 우선하고 각주의 보험법에 보험사업의 정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2001년 California 보험법 22조는 보험을 우연하거나 알 수 없는 사고로 인한 멸실, 훼손 또는 책임을 보상하기로 인수하는 계약이라고 정의하며, 2000년 West Virginia 보험법 33-1-1조는 후일 확정되는 우연한 사고에 대하여 규정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인수하는 계약이라고 한다.

일부주법은 특정한 행위를 보험에서 제외하기도 한다. 예컨대 Minnesota주법[10]은 자가보험계획(programs of self-insurance or self-insurance pool)은 이 법에서 보험의 정의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Maine주 보험법[11]은 자선 선물연금이나, 도로 또는 여행자서비스계약 그리고 가정서비스계약(charitable gift annuity, road or tourist service contract and home service contract)은 보험계약으로 고찰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2. 미국판례상의 자동차고장담보관련 판례의 검토

미국 판례는 보험업의 정의에 관하여 Jordan v. Group Health Association사건[12]이래 주요대상과 목적기준(principal object and purpose test)을 적용하고 있다. Ohio법원은 자동차 제조자과 매도인의 보증(warranty)을 확대하고 자동차의 부품의 기능상의 파손을 수선하는 자동차보호계획(vehicle protection plan)은 보험사업이 아니라고 한다.[13]

매수인이 연회비를 지급하고 비용과 관계없이 훼손된 자동차를 매도인이 수

10) Minn. Stat. §304.1-030(2001).
11) Maine Rev. Stat. Ann. tit.24-A, §3.
12) 107 F.2d 239 (D.C.Cir. 1939).
13) Griffin Systems, Inc. v. Ohio Department of Insurance, 575 N.E.2d 803 (Ohio, 1991)

선하기로 하는 선급충돌계약(prepaid collision contract)은 자동차사고로 인한 물적 손해를 담보하는 보험과 유사하다고 판결된 예가 있다.[14]

소위 자동차충돌손배보장(collision damage waver:CDW)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렌탈판매점에서는 렌탈시 리스하고자 하는 자동차의 손해에 대비하여 보호제도를 구입할지 여부를 질문받게 되고, 1일 렌탈료의 10퍼센트에서 20퍼센트에 이르는 비용을 지급하게 되는데, 이는 보험으로 여겨져 과거에 렌탈업자는 이를 보험이라는 제목을 달기도 하였고, CDW는 보험사업은 아니지만,[15] 금전과 교환하여 렌탈업자가 다수의 자동차에 대하여 훼손위험을 다수의 거래자의 공동기금으로 분산하는 사실은 여전히 문제가 남으며 각주의 입법정책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한다.[16]

3. 시사점

보험의 정의가 우리와 유사한 미국에서 자동차매도인의 보증(warranty)를 확대하고, 자동차부품의 기능상의 파손을 보장하는 사업을 보험사업으로 인정한 판례가 존재하는 점은 우리 자동차보험에서 고장담보보험을 시판하는 중요한 근거로 들어질 수 있다.

Ⅳ. 미국과 영국에서 고장담보보험(vehicle mechanical breakdown insurance)

1. 정의

14) People v. American Motor Club, Inc., 520 N.Y.S.2d 383(N.Y.Supp. 1987).

15) Truta v. Avis Rent A Car Sys., 238 Cal.Rptr. 806(Cal.App. 1987)사건은 CDW 옵션은 보험이 아니라고 하지만, Passamano v. Travellers Indem. Co. 882 P.2d 1312(Colo. 1984)는 콜로라도 법상 자동차렌탈약정은 임대차이상이고, 실제로는 책임보험계약이라고 판시하였다.

16) Robert H. Jerry, Ⅱ/Douglas R. Richmond Ⅱ, op. cit., p. 29.

미국에서 자동차고장담보보험은 자동차의 소유자, 매도인, 리스회사 이외의 자가 자동차의 기계적 고장으로 인한 비용의 위험을 인수하는 약정을 의미하고, 자동차렌탈서비스·견인서비스·여행중단과 같은 고객지·편의서비스를 포함할 수 있으며, 자동차서비스 약정·확장된 보증(extended warranty)서비스약정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진 약정을 포함하여야 하는 것으로 정의된다.[17]

2. 영국실무의 예

영국의 고장담보보험[18]은 약 369파운드의 보험료로 (1) 보장항목의 교체·수리 비용을 보장하고, (2) 가장 근접한 수리점에서의 수리를 제공하며, (3) 7일까지 임대차량을 제공하고, (4) 호텔투숙을 제공한다. 또한 (1) 고장·시동불능시 가정·도로에서 지원서비스, (2) 호텔투숙 또는 이후여행서비스, (3) 고장시 추가비용없이 철야 보관, (4) 친구 또는 가족에 대한 연락서비스, (5) 가장 근접한 공식 수리점까지 견인, (6) 수리후 반환, (7) 여행중 의료비의 지급, (7)운전자가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는 경우 영국에의 귀국을 보장한다.

Ⅴ. 맺음말

자동차보험은 피보험자동차의 소유, 사용, 관리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또는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보상하는 보험이다. 자동차고장은 자동차운행 중 발생할 수도 있고 자연소모로 인하여 발행할 수도 있다. 특히 후자의 경우에는 우연한 사고가 아니므로 보험의 원리상 보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업감독규정은 "자동차의 소

17) Louisiana Revised Statutes Title 22(Insurance Code) Subpart L. § 361(Definitions) (9).

18) http://uk.smart.com/information-service-after-sales-smartmove-assistance-mechanical-breakdown-insurance/06226024-4f3a-5d23-b130-4cc5cebb3bd3

유·사용·관리로 인한 피보험자의 각종 비용 담보"(동규정 제7-62조 제2항 3호)하여 자동차고장담보험이 허용되고, 이미 현대해상과 동부화재는 자동차제조회사의 요청에 따라 자동차제조회사가 보험계약자이고 자동차고장의 경우 자동차 소유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일반상품을 판매한 적이 있으나 역선택과 도덕적 위험으로 인하여 판매가 중단된 상황이다. 생각건대 보험가입시 자동차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는 증 도덕적 위험과 역선택의 방지를 위한 조치를 전제로 자동차고장보험의 활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다.

<참고문헌>

John Birds, Modern Insurance Law (Sweet & Maxwell, 2010).

Malcolm Clarke, The Law of Insurance Contracts (informa, 2009).

Law Commission, Insurance Contract Law Issues Paper 4 Insurable Interest, 14 January 2008.

Robert H. Jerry, Ⅱ/Douglas R. Richmond, Undestanding insurance law (LexisNexis, 2007).

이기문 감수, 동아새국어사전, 동아출판사, 1989.

양승규, 보험법, 삼지원, 2004.

한창희, 보험법, 국민대학교 출판부 2012.

한창희, 해상적하보험상의 피보험이익, 법학논총 제28권 제2호(2011), 한양대학교 법학연구